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30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30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나10070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가합41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1. A

2. B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3. C

원고, 상고인4. D

5. E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6. F

7. G

원고, 상고인8. H

9. I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판결 선고2014. 10. 27.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나1007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C, F,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 D, E, H, I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한 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납입 받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다음, 원고 C, F, G에 대한 구체적인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들이 분양대금의 납입을 지체하여 발생한 연체이자까지 포함된 실제 납입금액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정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실제 납입한 금액에 포함된 연체이자 중 정당한 분양대금에 대응되는 부분은 분양대금의 납입 지체로 인한 위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피고가 그 부분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부당이득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C, F,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A, B, D, E, H, I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